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더타코부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403049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04.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2.11

thetacobooth.com
h@thebooth.co.kr

- 더타코부스 -

정보공개서

[(주)더타코부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5, 103~104호 (신사동)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9길38, 5층 (압구정 승빌딩)

[대표전화번호] 1551-4335 [대표팩스번호] 02-6971-9728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본부 1551-433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더타코부스	더타코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5, 103~104호 (신사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9.01	2022.09.30	김희윤	1551-4335	02-6971-9728
	법인등록번호	110111-8413108	사업자등록번호	594-88-024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기재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더타코부스	영문상호 : THE TACO BOOTH
상 호	더타고부스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과 건물명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THE BOOTH THE TACO BOOTH	출원번호 4020240101176
	더부스 더타코부스	출원번호 4020240212450
	1993 The Taco Booth 	출원번호 4020240212454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154,807	151,122	3,685	70,031	-16,475	-16,315
2023	443,316	315,793	127,523	1,800,190	144,880	123,838

- 당사는 2022년 09월 30일에 개업하여 2021년은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희윤	사내이사	2022.09.01~현재	대표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없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3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출원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THE BOOTH THE TACO BOOTH	해당 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 2024.06.04	출원번호 4020240101176	(주)더부쓰	-
더부쓰 더타코부쓰		출원 2024.11.19	출원번호 4020240212450	더타코부쓰 주식회사	-
1993 The Taco Booth 		출원 2024.11.19	출원번호 4020240212454	더타코부쓰 주식회사	-

- 위와같이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은 출원 중이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더타코부쓰] 가맹사업 현황

1. [더타코부쓰]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4년 11월 1일

(직영점 시작한 날 : 2022년 11월 1일)

2. [더타코부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더타코부쓰	더타코부쓰	김희윤	2024.11.01.~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9길 35, 103~104호 (신사동)

3. [더타코부쓰] 업종

영업표지	업종	
더타코부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양식	보울, 부리또, 타코, 샐러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타코부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1	-	1
서울	-	-	-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더타코부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 바로 전 3년간 [더타코부쓰] 가맹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더타코부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해당없음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해당없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 바로 전 3년간 [더타코부스] 가맹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더타코부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더타코부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일)
2023	없음	없음

○ 당사의 [더타코부스] 가맹사업은 미설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더타코부스]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타코부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200	3,200	-
광고	소 계	연중	-	-	-
	TV				-
	라디오				-
	인터넷				-
판촉	소 계	연중	-	-	-
	계절별 행사				-
	사은 행사				-

○ 당사의 광고 판촉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로 합계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가맹금예치 서비스부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1599-8000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가맹계약체결일 이후 신한은행에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가맹금 예치서비스"를 검색하여 로그인한 다음 '더타코부스'를 찾아 가맹금 예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예치 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더타코부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더타코부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9,8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	"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 영업이 개시되거나 교육이 시작된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오픈 홍보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	"	1. 개점홍보를 실행한 경우	개점홍보가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미수금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조건
총계	3,000			
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금액은 귀하의 성실한 계약이행 및 위반횟수나 위반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2,8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오픈홍보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통해 예치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66㎡(15평) 기준	3.3㎡당			
총계		66,325				
간판/사인	협력업체	7,700		계약시 50% 완공시 50%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1면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 공사)	협력업체	32,175	2,145			
설비 및 집기 (주방집기,홀집기, 기물 등)	협력업체	19,700		계약시 50% 입고시 50%		
가구(의탁자)	가맹본부	4,000		계약시 100%		
오픈물품	가맹본부	1,650				
아트드로잉	가맹본부	1,100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의 도면노하우 제공 및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른 설계·시공의 준수여부 확인, 직원파견 등에 따르는 디자인노하우 제공 비용 평당 오십만원(₩500,000)<부가세별도>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 상기 표의 금액은 기준평수를 3.3㎡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간판과 사인물 일체, 주방기기 및 비품, 의자/탁자, 키오스크, CCTV, 기타공사, 초도물품은 실제 평수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의 인테리어 비용은 점포내장공사에 수반되는 설계 및 디자인, 도장, 바닥, 목공, 설비, 전기배선, 조명, 금속, 창호 공사에 관련한 기본인테리어 비용이며, 기본인테리어 공사 범위가 아닌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승압,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소품, 어닝, 내외부닥트, 외부샷시, 가설칸막이, 자동문, 바닥콘크리트타설, 우드블라인드, 간판 및 사인, 상하수도 인입, 파사드, POS, 테블릿 메뉴판(테이블주문기), CCTV, 음향설비, TV/오디오, 테라스, 폴딩도어, 저온창고 등은 **별도 비용이 부담**되며, 야간공사 진행여부, 특수상권 입점 시 특수상권 공사 및 시설 기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실측결과 및 인테리어 컨셉의 변화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점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의 동의 또는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시 확정

○ 점포 선정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체되어 영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언을 행할 뿐이며, 이는 해당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여부 및 높은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점포 설치 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교육 및 필요 시 조리 및 서비스 보수교육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종사시켜서는 안됨
종업원	필요 시 입문 및 조리 및 서비스 보수 교육	만18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종사시켜서는 안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더타코부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설비/집기, 초도물품의 물품 내역은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 매출액의 4.4%	익월 15일	월단위 입금으로 반환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 및 지정 전용상품 100% 사용 및 판매 시 로열티 2.2%로 할인 적용
POS사용료	협력업체	월 40천원	별도 공지	-	사용된 비용	POS세트
광고 및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실시 전	실시 이전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적 시행만 해당 / 지역별은 각 가맹점 실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별도 공지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이나 기간 경과 후 반환 안됨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미정)	실비부담	별도 공지			교체·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미정)	가맹본부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시 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더타코부스

						경과했을 시 부담
--	--	--	--	--	--	-----------

○ 가맹점의 물품 주문은 선입금후 출고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발주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미입금 또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등이 함께 청구된 경우를 포함) 발주시스템 상 물품에 대한 주문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2023년 가맹사업 미실시이므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 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더타코부스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와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더타코부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승계하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당사에 가입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당사의 운영방침 및 가맹사업시스템, 가맹점 운영방식과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가입비와 교육비는 VAT 포함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VAT가 없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을 비롯하여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 및 반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오십만원 (₩500,000)정을 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종료로 인한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더타코부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는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물품을 당사 [더타코부스]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받을 설비 및 물품의 범위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거래형태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과 제조사/공급단위/거래상대방을 시장상황 및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 없음			

○ 2023년 가맹사업 미실시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더타코부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더타코부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더타코부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지 참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위생수준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조리 기준에 따라 제공할 것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구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구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구역의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구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구역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구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구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교육, 홈페이지 또는 공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구역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더타코부스"와 동일한 업종 (부리도, 타코 등 멕시코음식 및 보울, 샐러드를 판매하는 업종)	[더타코부스]	해당없음

○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더타코부스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로드상권일 경우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1. 계약점포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2. 로드상권 내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영업지역은 가맹점 계약점포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1km로 하되, 당사와 합의하여 영업지역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영업지역표시도 상 지도의 내용과 표시에 의합니다. 단, 영업지역은 별첨 지도의 경계선을 불 포함한 안쪽 지역입니다.

○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서 귀하의 계약점포가 로드상권 내 위치하고 가맹계약서나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별첨의 영업지역에 표시되지 않아도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구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영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더타코부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

더타코부스

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더타코부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개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개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된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당사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가맹희망자가 직영점의 양수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직영점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전환되고 가맹계약서 또는 합의에 의해 새로이 영업지역이 설정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 직전년도 말 기준 가맹점은 없으며 직영점을 운영중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직전년도 말 기준 가맹점은 없으며 직영점을 운영중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더타코부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고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생관리, 유해식품사입, 객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한 고객 불만이 연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현재 또는 개정되는 가맹사업법 및 식품위생법등 각종 정부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5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2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귀하가 무단으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폐점절차를 진행한 경우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동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귀하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달리 대다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이 동의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공법이나 서비스기법이 달라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서 당사의 명성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 당사는 양수희망자가 신용도 등의 문제로 가맹본부인의 명성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나 양수 희망자가 영업을 양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양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업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절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희망자는 거절이 통보된 때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거절사유에 대하여 소명 및 검증함으로써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시 가맹점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입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또한 양도 등에 따라 당사가 진행하여야 할 행정적 실비(양도양수 진행 및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와 계약서 작성 등)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귀하는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 준용	교육수로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더타코부스

업무위탁	불가			
------	----	--	--	--

○ 귀하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귀하가 대한민국 내에서 [더타코부스]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더타코부스”와 동일한 업종 (부리또, 타코 등 멕시코음식 및 보울, 샐러드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더타코부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권장 : 오전 11시 00분~ 오후 10시 매장특성에 따라 상호 협의 가능	연중무휴	설날,추석연휴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결정해야한다. 단, 백화점 및 쇼핑몰 입점시 해당업체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당사에 휴업 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무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주방과 홀의 적정 운영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귀하는 이를 토대로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타코부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더타코부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단위: %)		분담 내용 및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 20%	광고비 80%	※ 가맹점별 부담액은 가맹점 월 총매출액 비율로 산정함 ※ 광고 분담 비율에 대하여 사전 동의 받은 후 기금형태로 수취	계획 공고 → 가맹점 의견청취 → 시행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없음	전액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이 고려하고 있는 할인카드 및 멤버십 제휴서비스,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조건 등을 행할 뿐이며, 실시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함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없음	전액부담				

- 당사는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건 등을 행할 뿐이며, 실시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최종 결정에 의합니다.

-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더타코부스]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공급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만원(₩10,000,000)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오천만원(₩50,000,000)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 5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⑨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체결	D-28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2(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지원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 전)	회사 소개, 조리교육 및 서비스교육, POS 및 장비 사용 교육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보수 교육 (정기/부정기)	메뉴 교육, 신메뉴교육 운영관리 실무 등	집체or개별 실습교육	별도 통지	필수교육
파견 교육	메뉴 교육, 운영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별도 통지	필요시

○ 개업교육은 매장 오픈시기를 고려하여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더타코부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업 교육	5일 (8시간/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2일 (8시간/일)	265만원(vat포함)	필수교육 관리자변경/신메뉴 출시
파견 교육	1일 (8시간/일)	55만원(vat포함) 파견인력 1인당/1일	필요시

○ 개업교육은 정해진 교육 일정외의 추가교육이나 현장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업교육의 일수 및 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호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개업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 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더타코부스 압구정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5, 103~104호 (신사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1년2개월	22.11월~23.12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1,003,948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23년1월~12월)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 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 재무제표 > 2022년

당사는 2022년 09월 30일 개업하였으므로 2021년 재무제표는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재무제표 >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기기설비 리스트 >

[매장환경에 따라 품목 및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원부재료 리스트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메뉴별 판매가격 >

[상권 및 입지에 따라 가격과 취급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위반 시 책임	비고
타코	비리아 타코 2pcs	13,600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가격통보방법 서면 / 공문
	감바스 타코 2pcs	12,500		
	까르네 아사다 타코 2pcs	11,500		
	뿌요 타코 2pcs	10,500		
	피카딜로 타코 2pcs	9,500		
콘보울	감바스 라이스보울	14,500		
	까르네 아사다 라이스보울	14,000		
	뿌요 라이스보울	12,500		
	피카딜로 라이스보울	11,500		
	감바스 샐러드보울	15,500		
	까르네 아사다 샐러드보울	15,000		
	뿌요 샐러드보울	13,500		
	피카딜로 샐러드보울	12,500		
부리또	감바스 라이스부리또	12,800		
	까르네 아사다 라이스부리또	11,800		
	뿌요 샐러드부리또	10,800		
	피카딜로 샐러드부리또	9,800		
	감바스 샐러드부리또	12,800		
	까르네 아사다 샐러드부리또	11,800		
	뿌요 샐러드부리또	10,800		
퀘사디아	피카딜로 샐러드부리또	9,800		
	까르네 아사다 퀘사디아	15,000		
	뿌요 퀘사디아	14,000		
	피카딜로 퀘사디아	12,500		
	햄치즈 퀘사디아	9,800		
사이드	비리아타코&해장라면	14,000		
	치폴레 치킨프라이	15,800		
	버팔로윙	11,800		
	더티프라이즈	10,800		
	오리지널프라이즈	7,800		
	과카몰리	4,800		
	소스(뉴욕렌지,만자나시트러스,칼릭블랑코)	1,000		
플래터	타코 플래터	36,500		
	화이타 플래터	46,500		
주류/음료	대동강 맥주(병)	8,000		
	청포도케일	6,000		
	바나나케일	4,500		

<메뉴는 당사의 사업성 판단과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더타코부스 (더타코부스)
	성명(대표자)	김 희 윤
	주소(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5, 103~104호 (신사동)
예치가맹금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가맹점 현황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②항에 의거

- 정보공개서 제공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있는 경우

순번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기타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없을 경우

- 해당 지역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공일 :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 _____ (인/서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더타코부스]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상기인은 정보공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더타코부스]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상동
주소	상동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상기인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더타코부스